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장기 체류 등 병역면탈 행위자 병역의무 연령 상한 상향〉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31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입영·병역 의무 및 병역의무 불이행자 제재 연령 상한 상향 조정	5
2. 전시·사변 선포 중 현역·예비역 등 병역의무기간 상향 조정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5.
3. 회부연월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이들의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함과(안 제71조제1항 단서, 제72조제1항 단서 신설) 동시에 관허업(官許業) 허가 금지 등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상한 연령도 입영·병역 의무 면제 연령 상향에 맞추어 45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또한,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현역·예비역 등의 병역 의무기간을 현행 45세에서 47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제9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 ----- ----- ----- ----- ----- -----

현행	개정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 12. (생략) ②·③ (생략)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	----. 다만, 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43세부터 면제되며,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 -----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의무는 45세까지로 한다. ②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u>45세</u> 까지로 연장	----- ----- ---- <u>47세</u> -----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u>45세</u> 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변경	8. ----- ----- ----- <u>47세</u> -----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 입영·병역 의무 및 병역의무 불이행자 제재 연령 상한 상향 조정

□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이하 “입영 의무등”이라 함)가 면제되는 연령을 36세로 하고, 40세가 되면 병역의무 자체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현역병 입영기피 등 「병역법」 제7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무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36세가 아닌 38세로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음(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40세로 동일).

<입영의무 연령 상한 가중(36세→38세) 사유 14개 유형>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 그런데 입영의무 연령 상한이 가중 적용되는 일부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의무등이 면제되는 38세 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가 될 때까지 해외에서 장기체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다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귀국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실정임.¹⁾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현황>

(단위: 명, '24. 11. 30. 현재)

계	24세 이하 (미허가)	25세 이상(허가)			
		소계	영주권 등	부모동거	국외출생 (복수국적)
78,663	14,145	64,518	42,807	11,388	10,323

※ 자료 : 병무청

1) 한국일보 : "유승준처럼 군대 가기 싫어서" 매년 병역 자원 10명 중 1명 국적 포기(2024.10.11.)
더 팩트 : "병역면탈 뿌리 뽑자"...여야, 모처럼 한목소리(2024.10.11.)
머니투데이 : "군대 안 갈래" 해외 떠도는 청년들...39세까지 버티면 면제?(2023.1.16.)

<최근 3년간 입영 등 기피자 현황>

(2024. 11. 30 기준, 단위 : 명)

구분	병역기피자				
	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사회복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24년	665	146	244	89	186
'23년	745	140	322	87	196
'22년	660	110	280	85	185

※ 자료 : 병무청

□ 이에 개정안은 입영의무 연령 상한이 가중 적용되는 14가지 유형 중
정당한 사유없는 입영 기피자, 미허가 출국자, 정당한 사유 없는
미귀국자 등 4가지 유형의 병역면탈 시도 행위에 대하여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각각 연장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공무원 임용, 관허업의 특허 금지 등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²⁾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방식의 병역면탈 시도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공무원, 기업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될 수 없으며, 각종 관허업(官許業)을 영위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고령(38세) 면제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국외이주	행방불명 등	기피
'24년	5,619	4,394	1,132	93
'23년	5,626	4,440	1,090	96
'22년	5,948	4,674	1,199	75

※ 자료 : 병무청

□ 다만, 개정안에서 입영의무 연령 상한을 상향하고자 하는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1호(국적회복자)의 경우 「국적법」 제9조³⁾에 따라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적회복자의 경우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과거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유형을 선정하여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일괄 상향했던 사례⁴⁾와 금번 개정 취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14개 유형 전부를 입영 의무 면제 및 병역 의무 종료 연령 상향 대상으로 삼도록 수정하는 것이

3)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94년 이후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일부 유형(14개)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 설정*하였고, '10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함

* 일반적인 경우(31세)와 병역기피 의심 유형(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구분하여 설정

** 일반적인 경우(31세→36세) 및 병역기피 의심 유형(36세→38세) 각 상향 조정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재외동포청은 실제 병역기피 의도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고려없이 해외동포를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전시·사변 선포 중 현역·예비역 등 병역의무기간 상향 조정

□ 개정안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현역·예비역 등의 병역의무기간을 현행 45세에서 47세로 상향하려는 것으로써, 입영 의무 면제 및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함에 따라 전시·사변 중 병역의무기간 상한 연령을 함께 상향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시·사변 중 병역의무기간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동 개정안의 주요 입법 취지인 병역 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 방지와는 다소 무관한 내용이며, 병역의무 종료 연령과 연동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및 병무청은 전시·사변 중 병역의무의 범위는 전시 전투 능력·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정⁵⁾하여야 하며,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과 연동하여 일괄적으로 전시특례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5) 고령자는 병력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병역법」은 전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5세'로 설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07